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업자 처벌 강화돼야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는 국내 농축산업을 명들게 하는 사안인 만큼 그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마련돼야 한다.

최근 원산지 둔갑판매에 대한 단속강화로 원산지 둔갑판매업자들의 적발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이들 업체의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다가 처벌규정까지 미약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당국자도 최선을 다해 원산지 미 표시 업자 및 둔갑판매업자 적발에 나서고 있으나 인권보호라는 업무 규정으로 1심형이 확정되기까지 단속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행규정으로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위조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고 벌금 또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징수금액은 소액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단속 제도 등 행정업무를 맡고 있지만 행정 처벌권이 없어 어려운 여건아래에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업자 적발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현재의 상황에서 단속되면 벌금 내고 만다는 식의 풍토가 만연될 수 있는 최악의 여건이 조성돼 있다.

관계당국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내 농축산물 생산업자는 물론 나아가서는 선량한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당국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원산

지 둔갑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다 미약한 수준의 범칙금 그것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처벌규정 및 행태는 분명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 둔갑판매는 단순생계형 범죄와 분명히 그 성격부터가 다르다.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는 단순히 원산지를 둔갑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저질의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오인케 하여 그 산물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는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닭고기의 경우도 금년 들어 매월 6000M/T이상 값싼 냉동 닭고기가 수입되어 국내 수요의 25%를 잠식하고 있는데도 시중에서는 수입닭고기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결국 수입닭고기의 대부분이 외식업체, 단체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외식업체들도 공식적으로 수입육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을 보면 이도 소비자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중국산 닭고기가 수입되면 수입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육계산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둔갑판매는 타 범죄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생, 건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원산지 둔갑판매 업자단속 실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산지가 위조된 식품들은 일반 성인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등 단체급식업소에 상당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력한 처벌 규정의 마련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대다수 관련인들의 생각이다. 굳이 인권문제로 위반 업자들의 명단공개가 어렵다면 더욱 강력한 벌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단속 후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 원산지 둔갑판매업자가 더 이상 유통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처벌 규정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